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실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내건축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 분쟁 조정을 신청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절차 규정 (안 제2조의4 신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실내건축의 시설기준 고시 (안 제26조의5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실내건축(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내부 장식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

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절차 규정 (안 제41조제4항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공작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건축분쟁 조정에 필요한 비용 범위 규정 (안 제43조의4 신설)

건축분쟁 조정과 관련한 감정·진단·시험 비용, 검사·조사 비용 및 녹

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지차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실내건축 기준 등)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 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 여비 등 업무처리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2항 개정규정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등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조경면적	법정 ㎡, 설치 ㎡		건축종별		
	주차대수	법정 대, 설치 대 (옥외자주식 : 대, 옥내자주식 : 대, 기계식 : 대)				
	도 로 폭	전면 m, 측면 m				
	건축변경사항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간략설계서류(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합니다)
2.건축물의 구조도·구조계산서(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0호의4서식]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

구 분	현 상	항목점수	점수
일반사항	공작물 점검을 위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판 부재로 둘러싸여 있다.)	3점	
	최근 10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2점	
	높이가 13m 이상이다.	2점	
	이쑤시개가 들어갈 만큼의 균열이 있다.	2점	
	콘크리트(시멘트)가 떨어져 나갔다.	2점	

바닥 및 지지부	앵커볼트가 흔들리거나 뽑힌다	3점	
	공작물 바닥에 배수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물이 고인다.	1점	
	기타 이상한 점 × 이상한 점 몇 가지인지	개당 1점	
부재간 접합 부위	볼트(나사)가 느슨하거나 빠졌다. × 느슨하거나 빠진 볼트(나사)개수	개당 1점	
	볼트(나사) 연결부에 부식이 발생하여 페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녹이 슬었다.	1점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탈락되었다.	1점	
	기타 이상한 점 × 이상한 점 몇 가지인지	개당 1점	
선 부재	페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녹이 슬었다.	1점	
	선 부재에 변형이 발생했다. × 변형된 선 부재 개수	개당 1점	
	기타 이상한 점 × 이상한 점 몇 가지인지	개당 1점	
판 부재 (존재하는 경우만 해당)	판 부재가 탈락할 위험이 있다. × 탈락위험 판 개수	개당 1점	
	페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녹이 슬었다. × 녹슨 판 개수	개당 1점	
	기타 이상한 점 × 이상한 점 몇 가지인지	개당 1점	
합 계			

※ 비고

· 합계점수 9점 이하 : 비교적 안전하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합계점수 10~19점 : 주의 필요

· 합계점수 20점 이상 : 붕괴위험이 있어 위험함

* 합계점수 10점 이상인 경우 정밀구조진단을 받고 즉시 보수 또는 철거 필요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4(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지차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5(실내건축 기준 등)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 ③ (생 략)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0호의4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 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 여비 등 업무처리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763, 3764